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부동산 공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항공박물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건설분야 산업혁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및 조달청 파견 인력 각 1명(5급 2명), 건설분야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드론 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감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되고, 항공교통본부에 항공위성항법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물류실내 교통안전복지과 및 생활교통과의 업무·정원을 조정하면서 명칭을 각각 교통안전정책과 및 생활교통복지과로 변경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정책관에 두는 정원 3명(5급 3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감원하며,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을 기술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통안전복지과·버스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생활
교통과”를 “교통안전정책과·버스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생활교통복
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을
“교통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
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교통과장”을 “생활교통복지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3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31.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추진

32.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

축 및 제공

33.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34.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35. 철도·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3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제14조제4항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로, “기술서기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은”을 “1명(5급 1명) 및 도시정책관에 두는 정원 1명(5급 1명)은 각각”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제61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조달청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건설분야 안전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⑩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안전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7 중 총계 “993”을 “1,004”로 하고, 일반직 계 “983”을 “99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9”를 “60”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7”을 “26”으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3”으로 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8”을 “59”로 하고, 시설사무관 “64”를 “62”로 하며,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58”을 “61”로 하고, 행정주사 “89”를 “9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8”을 “5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996”을 “1,007”로 하고, 일반직 계 “986”을 “99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6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7”을 “26”으로 하며,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3”으로 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0”을 “1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1”을 “62”로 하고, 시설사무관 “65”를 “63”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

는 사서주사 “56”을 “59”로 하고, 행정주사 “78”을 “8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3”을 “4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3”을 각각 “1,495”로 하고, 시설주사보 “247”을 “249”로 하며, 시설서기보 “30”을 “32”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65”를 “181”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22”를 “20”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87”을 “71”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3”을 각각 “1,495”로 하고, 시설주사보 “242”를 “244”로 하며, 시설서기보 “30”을 “32”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65”를 “181”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22”를 “20”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87”을 “71”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15”을 각각 “616”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7”을 “8”로 하며, “토목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항공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15”을 각각 “616”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7”을 “8”로 하며, “토목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또는 항공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0”을 각각 “32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9”를 “320”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국 수도권광역급	3명	2023년 9월 30일까지
행철도과	(5급 1명, 6급 2명)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⑤ (생략)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과· <u>교통안전복지과</u> ·버스정책과· <u>모빌리티정책과</u> ·생활교통과·물류정책과·첨단물류과·물류산업과·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 및 자동차운행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 <u>교통안전정책과</u> · <u>버스정책과</u> · <u>모빌리티정책과</u> · <u>생활교통복지과</u> ----- -----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u>교통안전복지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교통안전정책과</u> 장-----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의 운영 및 개선</u>	<u><삭 제></u>
16. <u>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지도·감독</u>	<u><삭 제></u>
17. <u>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추진</u>	<u><삭 제></u>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0.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 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 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삭 제>	<신 설>	3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의 수립 · 시행 및 지방교통약 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시 행에 관한 지도 · 감독
2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 · 보급	<삭 제>	<신 설>	31. 장애인 · 고령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추진
22.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 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삭 제>	<신 설>	32.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 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 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3. 철도 · 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 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 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삭 제>	<신 설>	33.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 · 보급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 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삭 제>	<신 설>	34.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 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신 설>	25.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 책에 관한 업무	<신 설>	35. 철도 · 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 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 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 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⑪ 생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생활교통복지과장----- -----.	⑫ ~ ⑰ (생 략)	⑫ ~ ⑰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삭 제>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제14조(철도국) ① ~ ③ (생략)

④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철도투자개발과·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철도안전정책과·철도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⑧ (생략)

⑨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⑩ ~ ⑫ (생략)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토정책관에 두는 정원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철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

1. ~ 7. (현행과 같음)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5급 1명) 및 도시정책관에 두는 정원 1명(5급 1명)은 각각 -----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제61조(한시정원)

<삭제>

③ -----

--- 2023년 2월 28일 -----

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신설>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조달청 공무원으로

<신설>

<신설>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 건설분야 안전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⑩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안전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1.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2. 제6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 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3.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4. 제6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5. 제61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6. 제61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7. 제61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8. 제61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1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993	1,004	+11
일반직 계	.	.	983	994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59	60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27	26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51	53	+2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6	7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8	59	+1
시설사무관	64	62	-2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58	61	+3
행정주사	89	92	+3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8	51	+3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96	1,007	+11
일반직 계	986	997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	61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7	26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	53	+2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0	11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1	62	+1
시설사무관	65	63	-2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사서주사	56	59	+3
행정주사	78	81	+3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3	46	+3

.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3	1,495	+2
일반직 계	1,493	1,495	+2
시설주사보	247	249	+2
시설서기보	30	32	+2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65	181	+16
토목운영서기보	22	20	-2
기계운영서기보	87	71	-16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3	1,495	+2
일반직 계	1,493	1,495	+2
시설주사보	242	244	+2
시설서기보	30	32	+2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65	181	+16
토목운영서기보	22	20	-2
기계운영서기보	87	71	-16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15	616	+1
일반직 계	615	616	+1
시설주사보	7	8	+1
토목운영주사보	1	0	-1
행정서기 또는 항공서기	1	2	+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15</u>	<u>616</u>	+1
일반직 계	<u>615</u>	<u>616</u>	+1
·	·	·	
·	·	·	
시설주사보	<u>7</u>	<u>8</u>	+1
·	·	·	
·	·	·	
토목운영주사보	<u>1</u>	<u>0</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항공서기	<u>1</u>	<u>2</u>	+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10</u>	<u>321</u>	+11
일반직 계	<u>310</u>	<u>321</u>	+1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9</u>	<u>320</u>	+11